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25
----------	-----

제안년월일 : 2002. 3. 2

제안자 : 유남열의원외6인

1. 주 문

1. 결산검사위원 :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
2. 선임방법
 - 가.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3월 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8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 3.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조기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1,263명”을 “1,26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238명”을 “1,242명”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263</u> 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238명</u>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267</u> 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242명</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3월 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88회(임시회)제1차위원회(2002년 3월 11일) 상정의결

나.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2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명 증원
 - 총 정 원 : 1,263명 → 1,267명(증 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38명 → 1,242명(증 4명)
- ※ 증원직렬 : 사회복지직 4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63명에서 1,26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1,238명을 1,242명으로 하여 각각 정원을 4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 전담공무원을 조기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과 복지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증원의 필요성이 있어 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6
------------	-----

제출년월일 : 2002. 3.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조 기배치 지침에 따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 정원조정(안 제2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명 증원
 - 총 정 원 : 1,263명→1,267명(증 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38명→1,242명(증 4명)
 - ※ 증원직렬 : 사회복지직 4명 증원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서울시 조직 12200-152 : 2002. 2. 2)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